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의안 번호	123
----------	-----

발의년월일 : 2004. 9. 7.
발 의 자 : 신길철의원의6인

1. 제안이유

2004회계연도 제2차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하기 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함.

2. 주요골자

- 지방자치법 제50조 및 우리 위원회조례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
- 우리 위원회조례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위원회 위원은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 의결로 선임
- 위원의 정수는 11인으로 구성

3. 참고사항

- 가. 지방자치법 제50조
- 나. 서울특별시영등포구의회위원회조례 제8조2항

영등포구청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안)

의안 번호	124
----------	-----

발의년월일 : 2004. 9. 7.
발 의 자 : 신길철의원의 6인

1. 제안이유

지방자치법 제37조 및 우리구의회에출석하여답변할수있는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구민과 우리 구의회 의사를 구정 전반에 적극 반영되도록 하기 위하여 영등포구청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함.

2. 주요골자

- 구정질문 및 답변
 - 기 간 : 2004. 9. 18.(토), 20.(월) 10:00
 - 장 소 : 영등포구의회 본회의장
 - 출석대상 : 구청장, 부구청장, 행정국장, 보건소장, 재무국장, 생활복지국장, 도시관리국장, 건설교통국장

3. 참고사항

- 가. 지방자치법 제37조
- 나. 서울특별시영등포구의회에출석하여답변할수있는관계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 제2조
- 다. 서울특별시영등포구의회회의규칙 제65조